

**전시 참가 신청 및 계약서**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여** [***info@apac2025korea.org***](mailto:info@apac2025korea.org)**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  |
| --- | --- |
| **1** | **신청업체 정보** |

|  |  |  |
| --- | --- | --- |
| **회사/기관** | 이름\* | *APAC 2025* |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
| 연락처\* | *+82 10 1234 5678* |
| 이메일\* | *info@apac2025korea.org* |
| 홈페이지\* | *http://www.apac2025korea.org* |
| **담당자** | 성명\* |  |
| 직책 |  |
| 연락처\* | *+82 10 1234 5678* |
| 이메일\* | *info@apac2025korea.org* |

|  |  |
| --- | --- |
| **2** | **신청사항** |

|  |
| --- |
| 2-1. 홍보하고자 하는 분야 (물품 및 서비스): |
| 2-2. 부스 유형 (‘일반부스’의 경우, 설치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 |  |  |  |  | | --- | --- | --- | --- | | **구분** | **신청수량** | **부스별 금액(부가세 별도)** | **Total(부가세 별도)** | | **일반부스 (**3m x 3m x 2.4m**)** |  | KRW 5,000,000 | KRW | |

2-3. 부스 상호 표기 신청\*:

|  |  |
| --- | --- |
| **3** | **결제방법** |

|  |  |
| --- | --- |
| 수표 (추후 계좌 정보 안내) |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 등) |

※ 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에 귀하의 이메일로 청구서(Invoice)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결제링크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
| --- |
|  |

귀사는 전시회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본 신청서의 뒷면에 명시된 모든 면책, 포기 및 면제   
조항을 감수하고 수락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날짜**

**문의처** Tel. +82-051-711-0069, Email. [info@apac2025korea.org](mailto:info@apac2025korea.org)

**전시회 규정**

**용어의 정리**

1. “전시자”와 “후원사”에 해당되는 기업, 단체 그리고 조직은 전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비를 완납한 경우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5 국제 아시아태평양 해안학술대회 (APAC 2025)”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2025 국제 아시아태평양 해안학술대회 (APAC 2025)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참가 신청**

1. 모든 문서는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한다.

2. 전시회/후원사 계약은 전시참가자 또는 스폰서가 계약하고 부스 등록비를 완납하였을 때 확정된다.

3. 주관자는 충분한 공간이 없을 경우 어떠한 신청도 거절할 권리를 보유한다.

4. 전시자 또는 후원사가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만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전시자 또는 후원사가 책임을 진다.

전시면적 배정

1. 주관자는 신청순서, 전시품의 성격 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전시자 별 전시위치를 배정하고 할당한다.

2. 특별한 사정일 경우, 전시자와 후원사에 할당된 전시공간은 전시 준비 기간 이전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주관자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며, 전시자와 후원사는 변경사항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다.

참가비 납입

1. 전시자/후원사는 인보이스에 따라 즉시 납부해야 한다.

2. 전시자/후원사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이 미납일 경우, 주관사는 완납까지 전시자/후원사의 전시물을 수정하고 선택 가능하다.

3. 전시자/후원사는 참가비 정보를 제 3자와 공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설치 및 철거

1. 모든 전시물은 제출된 신청서의 정보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전시회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전시자 또는 후원사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관자는 전시자 또는 후원사에게 전시를 중단하거나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전시자/후원사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2. 설치 및 제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바닥, 천장 및 기둥장식을 포함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시자/후원사는 전시장의 지연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관자에게 해야 한다.

주관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후원사는 2025 국제 아시아태평양 해안학술대회 (APAC 2025) 전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전시자/후원사의 전시물 구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관자는 부스의 자료와 활동이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전시부스 관리

전시자/후원사는 전시기간 사이 사전 등록된 제품과 부스의 직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전시자/후원사의 활동이 전시의 본질과 반대될 경우, 주관자는 행위 또는 전시자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장 판매 활동**

전시회의 참가 목적은 방문객에게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이며, 전시자/후원사는 현장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관자가 정한 특별한 구역에서의 판매 활동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그와 관련된 세금과 기타 사항은 전시자/후원사의 책임이다.

위험 & 책임

전시자/후원사는 주최자에게 전시품의 도난 또는 손상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후원사는 전시 및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의 장치물품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 또는 후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화재, 도난, 손상 또는 기타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자 또는 다른 전시자/후원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자/후원사의 보험가입 또한 전시자의 책임이다.

4. 전시 부스 및 관련 장치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현지의 소방 및 안전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불연성 및 불연으로 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공사 및 시연을 제한할 수 있다.

취소

전시업자 또는 후원사가 할당된 전시 부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부스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후원사의 신청을 단독으로 종료 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취소에 대한 위약금

1. 전시자/후원사가 2025년 10월 4일까지 취소를 요청할 경우, 50%의 환불이 가능하다. 이 날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2. 2025년 10월 4일 이후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취소”의 경우 75%의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자 발급 거부를 입증하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학술대회 3일전에 주관자에 통보되어야 한다. 지불한 등록비 중 최대 25%는 주관자의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모든 환불은 학술대회 이후 처리된다. 결제방법(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에 관계없이 환불은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환불요청은 사무국에 연락하여 신청해야 한다.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취소될 경우,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예외적인 상황이 전시회 기간 발생할 경우 주관자는 전시 장소와 기간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 납부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으며, 전시업자나 후원사는 변경으로 인한 보상 청구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추가조항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는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전시자/후원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전시자/후원사는 파라다이스호텔에 의해 제정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분쟁해결

주관자와 전시자/후원사 간에 발생하는 이 규정과 관련된 분쟁 및 양측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한국상사중재원 부산지부에 의해 중재될 것이며, 그 판정은 어떠한 법원에 제출되지 않을 것이다.